

#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법령 반영 -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2. 연구비 사용 Q&A 사례

2021. 12.





#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법령 반영 -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2. 연구비 사용 Q&A 사례

2021. 12.



## 〈 일러두기 〉

- 본 사례집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과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구비 집행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만든 것입니다.
- 본 사례집은 재단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나 연구관리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은 개별 사안에 대한 관계 법령 적용 시 유권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 아울러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집의 수록 내용 중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 6. 과학기술정보신부)의 Q&A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이 자료집은 향후 보다 다양한 사례를 담아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 사례집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042-869-7788)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 1

2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 / 31

### 제1부

Q&A: 바뀌었습니다! 혁신법에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 1. 인건비

1. ‘인건비 계상률’은 무엇? .....	35
2. 참여연구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	37
3. 연구책임자 인건비 산정? .....	37
4. 연구책임자가 대학 강사일 경우 강사료 상관 없이 인건비 지급? .....	39
5.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을 경우 인건비 미지급으로 타 과제 참여 가능? .....	40
6. 3책5공을 채웠을 때 인건비 계상률 0%로 과제 참여 가능? .....	40
7.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무엇? .....	40
8.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 (민간 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 .....	41



## 2. 학생인건비

9.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42
10. 학생연구원 상급 학교(대학원)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	42
11.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43
12. 학생이 직장인일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	43
1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연구참여확인서 매월 제출 .....	44
14.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인건비계상을 계산? .....	44
15. 박사후연구원은 기존대로 학생인건비 지급? .....	46
16. 군사훈련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	46
17. 방학기간(1개월)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생인건비 초과 계상? .....	46
18. (인문사회) 인건비 전용에서 직접비 총액 범위? .....	46
19. (인문사회)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 가능? .....	47

## 3. 연구시설·장비비

20. 코로나로 인해 납품 지연된 장비가 연구기간 내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48
21.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내부 연구시설 임차료? .....	49
22.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를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49
23.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기자재의 연구 종료 후 추적 관리? .....	50
24.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예산 변경? .....	50
25. 최종 연구단계 연구장비 코로나 영향으로 연구종료 2개월 전 검수가 어려운 때? .....	50

## 4. 연구재료비

26. 연구재료 구입 기한? .....	51
-----------------------	----

## 5. 연구활동비

27.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 초과 집행?	51
28.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에서 참여연구자란?	52
29. 사무용기기 구입 기한?	52
30. 실험실 책상 수리비?	53
31. 연구근접지원인력 출장비 사용?	53
32. 내부참석자만의 회의비 처리?	54
33. 총 연구기간 종료 이후 학회 연회비?	54
34.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	55
35. (인문사회) 논문게재료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55
36. 학생연구원 학회 등록비, 입회비, 연회비 사용?	55
37. (인문사회) 연구개발과제 연구실 환경유지비 계상?	56
38. (인문사회) 연구실 운영 소모성경비 계상?	56

## 6. 연구수당

39.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연구수당 단독수령?	57
40. 다음 단계로 연구수당 이월 가능?	57
41. 미지급 0% 참여인력의 연구수당 수령 가능?	57
42. 연구기관 이관 시 연구수당 산출?	58

## 7. 위탁연구개발비

43.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은 무엇?	58
4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 잔액 전문기관 회수?	58



## 제2부

### Q&A: 동일합니다.

혁신법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연구개발비 제도입니다.

#### 1. 인건비

45. 인건비 월 지급액에 식대 및 주휴수당 계상? .....	63
46. 비전임교원(조빙교수) 인건비 지급? .....	63
47. 퇴직충당금 환급 비용 처리? .....	64
48. 연구기간 연장으로 미지급 인건비 증액? .....	65
49. 다년도 과제 최종 종료 시 퇴직금 전체 및 부족분 집행? .....	65
50. 퇴직금 적립 잔액 연구개발비로 여입? .....	65
51. 단기간 또는 초단기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	66
52. 비전임 교원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이 될 경우 인건비 계속 지급? .....	66
53. 참여연구원의 출간휴가 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 .....	66

#### 2. 학생인건비

54. 학생인건비 증액 한도? .....	67
------------------------	----

#### 3. 연구시설·장비비

55. 장비 구입 시 자체상금 반납? .....	67
56. 3천만원 이상 수리 비용 심의 대상? .....	68
57. 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의 소액 긴급 보수비 집행? .....	68
58.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 철거 가능? .....	68

#### 4. 연구재료비

59. 서버용 메모리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	69
60. 협약 전 구매했던 비용 현물 계상 가능? .....	70

## 5. 연구활동비

61. 학회장 겸직인 연구책임자의 학회출장비?	71
62. 세미나 개최 비용 처리?	71
63. 회의비 처리 시 참석자 서명 필수?	72
64. 특근 식대 집행?	72
65. 대학 내 내부 직원 전문가 활용비 지급?	73
66.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	74
67. 실험도구 수리비?	74
68. 화상회의 후 모바일 상품권 지급?	74
69. 비대면 회의 시 식비 사용 증명자료?	75
70. 논문 삽입 이미지 저작권료 지급?	75
71. 시약 보관할 시약장 구입?	75
72. 논문 관련 비디오 제작비?	76
73. 장기간 전문가활용비 지급?	76
74. 일용직 활용비 지출?	76
75.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지급 받는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	77

## 6. 연구수당

76. 근로소득자의 연구수당 집행 시 기관부담금 집행?	78
77. 종료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78

## 7. 위탁연구개발비

78.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처리?	79
---------------------	----

## 8. 간접비

79. 연구실 폐기물 처리비 사용?	79
---------------------	----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제정〉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19.11. 4.

〈개정〉 한국연구재단,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21.11.18.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公的) 자금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에서 제시한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들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이하 “협의회”)」간의 MOU(연구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2019. 8. 29.)에 근거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향후 관련 법규 등의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권고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중심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7] 및 [별표8])에 따릅니다.

###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재단 지원과제 수행 연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과 항목별 핵심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본 권고사항에 없는 사항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④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⑥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시행요강 및 협약서 등에 의거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 2. 적용 대상

- 본 권고사항의 적용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되는 재단이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입니다.

### 3.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

- 재단이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계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연구계획 확인

- ①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용도로 **연구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계상하고 사용한다.**

- 연구개발비는 항목별 총액\*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맞게 계획(계상)해야 한다.
-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재단)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는 별도 서식에 계상 필요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 동 사용 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 ②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제재 처분 대상이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항

- ③ 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기간(단계 연구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 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항

#### 관련규정 준수

- ④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과 해당 사업에서 명시한 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급기준에 따른다.

- (예시) 전문가활용비, 출장비, 연구실운영비 등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②항, ⑤항, ⑩항 등

⑥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책임부서에 질의하고, 수행기관의 책임부서는 전문기관(재단)에 질의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사용내역 입증

⑦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 등 다른 결제수단 사용 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항

⑧ 연구개발비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 (증명자료) 결의서, 영수증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 증명자료는 연구개발기간(단계) 종료 후 5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에 따른 전자문서, 전자화문서로 보관가능(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름)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입력) 연구개발비통합정보시스템([www.gaia.go.kr](http://www.gaia.go.kr))에 등록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②항 및 제72조(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 이해충돌 회피

- ⑨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인건비나 연구수당 지급액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항

- ⑩ 연구개발비 집행은 공무(公務)이므로 사무(私務)와 명확히 구분한다.

- 부득이 공무(公務)와 사무(私務)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관련 비용을 분리하여 집행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

## 4.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이 본 권고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은 필요 시 본 권고기준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시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비 항목별 집행가이드와 증명자료는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붙임1****항목별 연구개발비 사용 핵심 가이드****〈주의 사항〉**

본 가이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사항**

- ①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③항

- ② 환급 가능한 세금 등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비용 등은 인정된다.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환급 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주류 등 유통성 비용
- 중복 계상
  - 동일 비용 2회 이상 중복 계상, 동일 비용 현금/현물 중복 계상, 동일 비용 직접비/간접비 중복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거래(①동일법인 내 사업장 간 거래 포함, ②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 \* (예시) A대학 내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장 간 거래
-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비용
  -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비영리기관에 한함)
- 정부출연기관의 본원과 분원 간의 거래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p141)

## 2. 인건비

① 인건비는 연(대상: 정부출연기관) 또는 월(대상: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단위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한다.

- (인건비계상률 개념) 연(월)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
- (산출식)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0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항,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항 등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② 총인건비계상률은 대학 등은 월 100%(월 급여 기준), 정부출연기관은 연평균 130%(정부수탁과제 100%, 연 급여 기준)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하다.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

구분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130% 이하	월 100% 이하	연 130% 이하	월 100% 이하	월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100% 이하	월 100% 이하	연 100% 이하	월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100% 이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인건비 총액을 계상하며, 참여연구자 관리 등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한다.
- (관련 법령 등) 「근로기준법」,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등
- 인건비계상률은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⑤항, 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③항, ⑤항 등

③ (비영리기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은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④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46)

④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를 둑어서 사용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전출·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 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직접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 및 사용 금지).
- (참고)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이며, 간접비에서 지급할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임.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⑦항

⑤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참여연구자가 아니므로 연구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수당 사용기준(p178)

⑥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 (현금계상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등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⑤항

### 3. 학생인건비

①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월 100% 이내이며, 초과할 수 없다.

- (학생인건비계상을 제외 항목)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55)

② 학생연구원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한다.

- (확약대상)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기관장 3자 간 협약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②항

③ 상위 학위과정이 확정된 경우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상위 학위과정에 대한 합격통지서, 입학예정서 등 증명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빠고 1. '학생연구자' 정의

④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대학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고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직장인 학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참여 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5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57)

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연구개발기관(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⑦항,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⑥ 개인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 ①항~④항

#### 4. 연구시설·장비비

- ①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고 관계기관<sup>\*</su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계기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재단)), 1억원 이상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상기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www.zeus.go.kr](http://www.zeu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부착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항,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②항

- ② (원칙)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검수완료) 하여야 한다.

- 단,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종료일까지,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설치·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항

- ③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 임차료는 사용이 불가하다.(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가능) 다만,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가능하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5절(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162)

- ④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개발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5절(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163)

- ⑤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포털(ZEUS) 또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하고 구매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동 사용기준) ④항

## 5. 연구재료비

- ① 연구재료비는 연구재료 구입비(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로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라. 연구재료비

- ② 연구재료는 최종(단계) 연구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6절(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p166)

- ③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중앙구매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금액과 상관없이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물품에 대해 검수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항

## 6. 연구활동비

- 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sup>\*</sup>는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단,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항

- ② 참여연구자<sup>\*</sup>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sup>\*\*</sup>를 말함)에 소속된 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특정연구 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호제1호부터 제3호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항,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나. 사용기준(pp169-170)

- ③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계상할 수 없다(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사용 불가).

- 해당 연구개발기관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 포함.
- (증명자료) 내부결재 문서 또는 회의록, 영수증서

※ 사용금액과 무관하게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은 요구하지 않음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③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p171)

- ④ 여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항

- ⑤ 국외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⑦항

⑥ 소프트웨어활용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단, 재난·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전부를 계상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항

⑦ 학회 연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

- 단,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69)

⑧ 논문게재료는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시(사사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은 직간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69)

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69)

⑩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이 불가하다(사무용품비는 계상가능).

- (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70)

⑪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하다(단,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73)

## 7.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 포함)+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연구근접지원 인력 인건비 불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당시 계상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다.

-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다.
-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도 연구수당으로 계상 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①항, ②항

②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8절(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p176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단계 기간) 동안 참여한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항

- ④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1인의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⑤항

- ⑤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8절(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p178

- ⑥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계상 금액 내에서 사용).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8절(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p178

- ⑦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 사용액 부당회수 등 금지)

## 8. 위탁연구개발비

- ① 직접비<sup>\*</sup>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직접비에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항

- ② 원래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②항

- ③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이며,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 기관으로부터 사용 잔액 등을 직접 회수 가능하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⑥항

## 9. 간접비

① 연구지원비 내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는 대학만 계상 가능하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①항

②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해야 한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근거).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가록), 국공립연구기관(나목), 정부출연연구기관(다목), 특정연구기관(라목) ⇒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마목), 민법 등에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인(바목) ⇒ 별도 제한규정 없음(연구개발비 또는 자체 재원으로 계상가능)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항

③ 비영리기관은 간접비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기간 내에 간접비를 흡수해야 하며, 연구종료일 이후 흡수할 경우 회수대상임.
- (영리기관) 간접비 통합관리가 불가하며, 간접비 사용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3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①~②항, 제69조(영리기관 간접비 사용기준) ②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p188)

④ 간접비 비율은 연구개발과제 시작(단계)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적용된다.

단, 일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간접비비율을 간접비 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

-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경우 간접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이관한다.

**[간접비 이관금액 산출식]** 연구개발과제(해당 단계)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계획서 상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사전승인사항).
- 간접비 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이 가능하다(사전승인사항).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비 이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비율 적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항 등

⑤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이다.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간접비고시비율 산출) ④항

⑥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아래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불인정 (회수대상) 된다.

[간접비 불인정 금액 산출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관련 법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항

**붙임2****연구개발비 항목별 증명자료**

※ 출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목		증명자료
1. 인건비	내부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 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 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 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2.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인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3.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 자료

세목		증명자료
4. 연구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② 거래명세서</li> <li>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li> <li>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li> <li>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li> <li>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li> <li>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li> <li>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li> </ul>
5. 연구 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li> <li>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li> </ul>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li> <li>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③ 기술도입계약서</li> <li>④ 기술검수조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li> <li>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li> <li>③ 계좌이체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li> <li>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li> </ul>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li> <li>② 견적서</li> <li>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li> <li>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li> <li>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ul>
	국내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비규정</li> <li>② 출장신청서</li> <li>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장신청서</li> <li>② 출장 관련 서류</li> <li>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ul>

세목		증명자료
국외 출장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li> <li>② 내부여비규정</li> <li>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li> <li>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li> <li>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li> </ul>
	여비지급 내부 기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li> <li>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li> <li>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li> <li>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li> <li>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li> </ul>
5. 연구 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li> <li>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li> <li>③ 거래명세서</li> <li>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li> <li>⑥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li> </ul>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li> <li>③ 거래명세서</li> <li>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li> <li>⑤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li> <li>⑥ 자체규정</li> </ul>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② 거래명세서</li> <li>③ 자체규정</li> </ul>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li> <li>② 거래명세서</li> <li>③ 자체규정</li> </ul>

세목		증명자료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6.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 증명
7.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9. 간접비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붙임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공통사항<sup>1)</sup>)****1.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구매 및 검수의무 미존재(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6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사용기준 제22조제3항)</li> </ul>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li> <li>(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li> <li>(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 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사용기준 제22조제4항)</li> </ul>

**2.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li> </ul>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준과 동일)</li> </ul>
인건비계상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li> </ul>
계상을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없음(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li> <li>그 외 기관 : 월급여 총액 단위</li> </ul>
계상을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li> </ul>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li> <li>(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 (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준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li> <li>(계상을)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을 포함)하여 130%이내(출연연 기본 사업의 인건비계상을 포함)</li> </ul>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8을 따르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별표7, 8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사용기준 제116조(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제1항)

구분	종전	혁신법
참여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불가(3책5공 준수)</li> <li>(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을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3책5공 준수)</li> <li>(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입력됨</li> </ul>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li> <li>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li> <li>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li> <li>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li> <li>-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사항〉</li> <li>·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li> </ul>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li> <li>·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li> <li>·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li> <li>·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가능</li> </ul> </li> <li>·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 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 기준 별지2호서식) 관리 필요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li> </ul>

### 3.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p>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p> <p>〈신 설〉</p> <p>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p>	<p>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을만 고려</p> <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p> <p>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p> <p>※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p> <p>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p> <p>※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 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p>

## 1.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참여 협약 체결	<p>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p> <p>획약체결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li> <li>-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li> </ul>	<p>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p> <p>획약체결 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li> <li>-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li> </ul>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p>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p> <p>※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p>
박사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p>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p>

## 4.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장비도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li> <li>•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li> <li>• (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종료일까지</li> </ul> <p>※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p> <p>〈사용기준 제23조제5항〉</p>

## 5.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재료비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종료(연차) 전까지</li> <li>•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단계)종료 전까지</li> </ul>

## 6.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li> </ul> <p>※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p> <p>※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p>

구분	종전	혁신법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종료(연차) 전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li> <li>(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li> <li>(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li> </ul> <p>※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p>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단계)종료 전까지</li> </ul> <p>※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 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p>
연구실 운영 위한 소모성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상)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li> <li>(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상) 정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영리기관 계상불가)</li> <li>(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자체규정 마련필요)</li> </ul>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없음.</li> </ul> <p>※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li> </ul> <p>※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p>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li> </ul>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li> </ul>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li> </ul>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li> </ul>

## 7.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당집행 회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li> <li>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li> <li>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li> <li>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li> </ul>	▶	〈삭제〉
정부출연연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 가능</li> </ul>

## 8.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집행금액</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자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li> </ul> </li> </ul> <p>〈사용기준 제27조제3항〉</p>
정산 및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li> <li>(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li> <li>(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li> </ul>

## 9.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구분	종전	혁신법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li> </ul>
간접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li> </ul> </li> </ul> <p>〈처리규정 제25조제7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li> </ul>
간접비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li> </ul> <p>(사전승인사항)</p>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5%</li> <li>(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10%</li> </ul>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명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li> <li>(영리기관) 불가</li> </ul>

## 10.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 - 사용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도 운영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7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 (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시행령 제24조제4항〉</li> </ul>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중 하루 〈사용기준 제71조제1항〉</li> </ul>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에 한해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 까지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 〈사용기준 제71조제2항〉</li> </ul>
증명자료 보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명확(해당연도 종료일부터 또는 최종연구 종료일부터 5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li> </ul>
전자문서 보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9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li> </ul>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li> <li>•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처리규정 제27조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괄 및 건별지급 연구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사용기준 제70조제2항〉</li> </ul>
자체회계 감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 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처리규정 제27조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ul>

### - 사전 승인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li> <li>• 〈신설〉</li> <li>•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li> <li>-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li> <li>-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li> <li>- 〈신설〉</li> </ul> </li> <li>•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li> <li>•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li> <li>•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li> <li>- 〈자동〉</li> <li>- 〈자동〉</li> <li>-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 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li> </ul> </li> <li>•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이월)</li> <li>•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li> </ul>

구분	종전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 변경</li> <li>•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li> <li>•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집행하기 위한 간접비 비율 조정사항 〈처리규정 제18조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li> <li>• 전체(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li> </ul>
사전승인 통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통보기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일 내 통보 (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li> </ul>
전문기관 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의 20% 증액</li> <li>• 참여연구자 변경(연구개발정보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삭제&gt;</li> </ul>
통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li> <li>*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li> </ul> </li> <li>〈시행령 제43조제3항〉</li> </ul>

## 11.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li> </ul>
정산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별 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정산 (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li> <li>-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li> </ul> </li> </ul>
정산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확인서</li> <li>• &lt;신설&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좌동&gt;</li> <li>•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li> <li>• 모든 과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 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li> </ul> </li> </ul>
정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 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li> </ul>
정산시점	<신설>	
상시점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통한 상시 점검 가능</li> </ul>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li> <li>전자문서 및 전저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li> <li>(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li> </ul>
부당집행 금액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당집행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회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li> </ul>
회수금액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li> </ul>	 <p>〈삭제〉</p>
정산 이의신청 최대가능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로 정한 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1회에 한함 〈사용기준 제84조제1항〉</li> </ul>
회수금액 반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시스템 상 15일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국가안보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기 조정 가능</li> </ul>
회수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에 한해 면제</li> </ul>
회수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로 정한 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li> <li>-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li> </ul> </li> </ul>
정산이의 신청서 서식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서식 마련 (사용기준 별지 제6호서식)</li> </ul>
정부지분율, 직접비, 연구수당, 간접비 사용비율 등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연도 단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단계)연구기간 단위</li> </ul>

##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

### 2.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







## 제1부

**Q&A: 바뀌었습니다!**

혁신법에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 1 인건비

### Q1. '인건비계상률'은 무엇?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때 인건비 계상은 어떻게 하나요?

A. 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연구과제 참여율로 계상하였으나, 현재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로 계상합니다. 인건비 계상률 계산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대학(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포함)인 경우 '월'급여가 기준액이며,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연구소 포함)인 경우 '연'급여가 기준액입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월(연) 급여 대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하는 인건비 계상 비율입니다.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인건비 계상을 산출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됩니다.

#### ※ 인건비 계상을 산출식

$$\text{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 \\ \text{『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1호 ·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 \\ = \frac{\text{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text{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 \times 100 \\ \text{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예시) 월 급여 300만원 기준, 정부연구과제 A과제에서 인건비를 100만원 받을 경우 인건비 계상률은?  
 $\Rightarrow (100 \div 300) \times 100 = 33.3\%$

#### 〈참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구분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이하	월 단위 100% 이하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을 + ②학생인건비계상을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을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을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div$  연(월) 급여

- ② 학생인건비계상을(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④ 미지급인건비계상을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1. 6. p1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

### ○ (인건비)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계상비율 ⇒ <b>총인건비계상을</b>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li> </ul>
인건비 계상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서 별도 지급</li> </ul>
계상을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없음(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li> <li>그 외 기관: 월급여 총액 단위</li> </ul>
계상을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li> </ul>
인건비계상을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 (근거법령 미비)</li> <li>(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 (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li> <li>*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 하는 경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기준보다 적용 대상기관 확대)</li> <li>(계상률) 총인건비계상을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을 포함)하여 130% 이내(출연연기본 사업의 인건비계상을 포함)</li> </ul>
참여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불가(3책5공 준수)</li> <li>(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li> </ul> <p>※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을 100%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3책5공 준수)</li> <li>(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 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 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 RCMS 시스템에 자동 입력됨</li> </ul>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li> <li>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li> </ul>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li> </ul> <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p>

구분	종전	혁신법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li> <li>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li> <li>-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li> <li>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li> <li>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li> </ul> </li> <li>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 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 기준 별지2호 서식) 관리 필요&lt;사용기준 제65조제6항&gt;</li> </ul>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6.)		

## Q2.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인건비계상을 산출식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제외되는데, 해당 비용은 어느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 A.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집행합니다.

인건비 집행할 때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과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이 불가합니다.

#### ※ 인건비계상에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이 제외된 배경

과거 정부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때 4대 보험의 요율 변동 등에 따라 인건비 부족 등으로 여러 번 변경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을 현장에서 좀 더 편리 하도록 하기 위해 실제 인건비에서 해당 금액은 집행 하되,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을 산출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 Q3. 연구책임자 인건비 산정?

대학 자체규정에 연구과제 수행 시 교원 인건비 계상기준(교원 직급별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월 기준액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기준액을 해당교원의 실제연봉기준액이 아닌 자체규정의 직급별 교원인건비 계상기준을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 A. 근로기준법,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등에서 정한 월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인건비 계상 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입니다. 대학의 경우 인건비계상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원 연봉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2 참조)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①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을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연 급여"는 "월 급여"로 본다.  
② 대학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개월간의 급여(연구수당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2.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⑤ 대학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을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인건비 계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⑦ 대학의 장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Q4. 연구책임자가 대학 강사일 경우 강사료 상관 없이 인건비 지급?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료 받고 있는 연구자 분이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책임자 인건비를 지급하려 합니다. 시간강사료 월 금액과 관계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참조).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46

○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 계상 가능 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li> <li>「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li> <li>「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li> </ul>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li> <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li> </ul>
영리기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li> <li>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li> <li>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li> <li>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li> <li>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li> </ul>

**Q5.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을 경우 인건비 미지급으로 타 과제 참여 가능?**

A연구원은 대학 비전임연구원으로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 받지만 내부기준 인건비 최대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자체규정 등에 따른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인건비 계상을 100%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미지급 인건비계상을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혁신법 제2조제2호)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3호,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월, 연)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Q6. 3책5공을 채웠을 때 인건비 계상을 0%로 과제 참여 가능?**

3책 5공(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인건비 지급 없이 0%로 과제에 참여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3책 5공을 모두 참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인건비 계상을 0%로 참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참여하려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Q7.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무엇?**

연구근접지원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하나요?

**A. 직접비에서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으로 직접비 내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연구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를 사용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이 불가합니다.

구분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
내용	대학 등(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제12호)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연구 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 제2호)
인건비 재원	간접비	직접비 내 인건비

Q8.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

A. 미지급인건비로 계상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51).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 2

## 학생인건비

### Q9.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A.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받은 인건비 및 장학금 등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 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 〈참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00만원 이내
  -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80만원 이내
  -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 Q10. 학생연구자 상급 학교(대학원)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본교 학생연구자(학사과정생)이 2월 졸업 후 동일한 대학의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졸업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학생연구자'의 정의에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가 해당되므로 가능합니다.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 확정 확인 가능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학생연구자’의 정의

-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 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까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 Q11.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여부?

#### A. 불필요합니다.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을만 고려하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은 불필요합니다. 이는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참고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p155

### Q12. 학생이 직장인일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2021년 수행 연구과제에서 직장을 다니는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하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소속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5 참고)

### Q1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매월 제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하나요?

#### A.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제출하면 됩니다.

'학기, 학년'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연구참여 확약 체결 단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종전의 '월' 단위에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87조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계정책임자를 설정한 경우 그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및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학생연구자를 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참여확약서를 연구개발기관계정별 및 연구책임자계정별로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55

○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 분	종 전	혁신법
연구참여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학생연구자↔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기관장 3자 간 협약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외) 월 단위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Q14. 본교 학생이 타 대학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인건비계상을 계산?

본교(A)의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300만원이고 그 학생이 참여한 타 대학(B)의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200만원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본교 학생의 인건비계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A. 본교(A, 학생연구자 소속 대학)를 기준으로 총인건비계상을 10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을 본교를 기준으로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B대학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A대학에 통보해 총인건비 계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계상 시 대학재정 지원사업,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은 제외됩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7조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② 정부출연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④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 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⑤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에 따른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대학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대학이 사용하는 학생인건비의 사용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은 "대학"으로 본다.

**Q15. 박사후연구원은 기존대로 학생인건비 지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은 혁신법 적용 이후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인건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박사후연구원은 학생연구자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16. 군사훈련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군사훈련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 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 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인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7. 방학기간(1개월)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생인건비 초과 계상?**

방학기간 학생연구원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연구에 투입할 예정인데 지급 총액이 학생인건비 계상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지 않도록 분할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A. 불가합니다.**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인서에 명시된 참여기간 및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학생연구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도 안됩니다.

**Q18. (인문사회) 인건비 전용에서 직접비 총액 범위?**

직접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 시 직접비 총액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가 포함되나요?

**A. 직접비에 포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에 따르면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사용기준 별표7)

- 공통기준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하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기준에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는 인건비로 재분류되는 것으로 항목 간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연구 수행 중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아니므로 21. 1. 1. 이후 신규과제에서도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자교 학생연구자를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로의 전용도 20% 전용 제한에서 제외)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에서 인건비에는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음

### Q19. (인문사회분야)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의 인건비로 전용?

「연구개발혁신법」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 가능

#### A.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연구개발혁신법」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기준에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계상되었던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인건비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는 비목 간 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를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3 연구시설·장비비

#### Q20. 코로나19로 인해 납품 지연된 연구장비가 연구기간 내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년도 과제에서 당해연구기간 중 구매한 장비가 코로나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된 경우 당해 연구기간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가능합니다.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총연구기간 종료일(단계로 구분될 경우 단계연구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도입(검수)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은 재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시설·장비비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 Q21.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내부 연구시설 임차료?

### A. 불가합니다.

원래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 p162

####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공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 자산등록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

## Q22. 대학 내 공동실험실습관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를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제5호나목에 따라, 비영리 기관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Q23.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기자재의 연구 종료 후 추적 관리?**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 연구과제 종료 후 임의 처분이 가능한가요?

**A.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5조 등에 따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5조(처분결정)에 따르면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류 연구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결정한 불용 연구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연구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Q2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예산 변경?**

연구시설장비비로 신규 구축하기로 계획한 장비비를 연구개발계획서 협약 시 연구개발비종괄표에 통합비용에 계상하여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비로 통합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가 아닌 일반 장비비로 변경이 가능할지요?

**A. 협약변경 하셔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3조(연구시설장비비의 적립) ②항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비통합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협약을 변경하여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5. 최종 단계 연구장비 코로나 영향으로 연구종료 2개월 전 검수가 어려운 때?**

연구장비가 코로나로 인한 현지 사정 악화로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 완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A.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이 가능한 데 이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4 연구재료비

### Q26. 연구재료 구입기한?

연구수행과정에서 재료는 수시로 필요한데, 연구종료일까지 구매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연구재료비는 종전에는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일부부처는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했으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서는 최종(단계)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필요한 적정 수량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5 연구활동비

### Q27.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 초과 집행?

2020년 12월 기준으로 외부전문기술활용비가 이미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였는데, 추가로 외부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 A.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때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한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제외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 ❶ 기술도입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❷ 전문가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 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frac{\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text{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frac{\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text{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li> </ul>

Q28. 전문가활용비 지급 기준에서 참여연구자란?

A.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입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입니다. 비영리기관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가 속한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Q29. 사무용기기 구입 기한?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인 경우 혁신법 이전에는 연구과제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혁신법에서는 연구과제 종료일 이전까지 구매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별지 서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3호서식])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73

구 분	종전	혁신법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Q30. 실험실 책상 수리비?

실험실 내 학생의 책상 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실운영비(연구환경유지비)로 집행하면 될 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A. 가능합니다. 단, 자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직접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문의하신 실험실 책상 수리가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항에 따르면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내용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31. 연구근접지원인력 출장비 사용?

수행연구과제의 연구행정을 맡고 있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출장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해 출장비 등 연구활동비 사용비 불가했으나, 혁신법에서는 연구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 Q32. 내부참석자만의 회의비 처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내부 소속 인력만 참석하는 회의비(식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소속된 자가 1인 이상 참석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Q33. 총 연구기간 종료 이후 학회 연회비?

총 연구기간이 2021. 1. 1.~2021. 12. 31.이고 2021. 8. 1.에 결제일로부터 1년인 연회비를 결제할 경우 집행 가능한가요?

#### A.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연회비 사용일이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과제와 관련된 학회일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신 학회비는 불가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69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

### Q34.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험분석비도 수행연구과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하였기에 연구수행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험분석비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Q35. (인문사회) 논문게재료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기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2년 이내 논문게재료 집행이 가능하였습니다.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구기간 내에서는 직접비에서 집행(연구기간 내 원인행위 후 정산기간 내에 집행도 가능)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기간 종료 후에는 간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직접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통신부, p213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 분	종전(~'20년)	변경('21년~)
논문게재료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가능	→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불가

### Q36. 학생연구원 학회 등록비, 입회비, 연회비 사용?

학생연구원이 학회발표 전제조건으로 가입 및 학회등록 하고자 하는데 학술대회 등록과 동시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학생연구원이 참여연구원이고,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이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연구기간 내에서 학회 가입비, 연회비, 등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Q37. (인문사회) 연구개발과제 연구실 환경유지비 계상?

학술·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구실 환경유지비를 계상할 수 없었으나, 혁신법 시행 이후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에서도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책상, 서랍 등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에 따른 연구실 대상 범위, 기준 등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별표 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 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중 공동기준 제5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부분에서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필요 물품을 계상 및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참조)

####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통신부, p213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 분	종전(~'20년)	변경('21년~)
연구환경유지비	· 계상불가	→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 Q38. (인문사회) 연구실 운영 소모성경비 계상?

학술·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구실운영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매 비용을 계상 할 수 없었습니다. 혁신법 시행 이후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에서도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에 따른 연구실 대상 범위,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별표 7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연구 개발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중 공동기준 제5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부분에서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6 연구수당

### Q39. 단계연구기간 내에서 연구수당 단독수령?

단계연구기간이 3차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참여연구원 2명, 2차년도에 1명, 3차년도에 1명일 경우 2~3차년도에 참여연구원이 모두 1명인데 연구수당 단독 수령이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 기간은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이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년에 걸친 단계연구기간의 과제로 1~3년차 동안이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1~3년차에 2명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참여연구원 1명에게 총연구기간 도는 단계연구기간의 연구수당 사용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Q40. 다음 단계로 연구수당 이월 가능?

혁신법으로 정산은 최종(단계) 종료 시에 이루어지는데, 단계 간 연구개발비는 사전 승인 시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구수당도 이월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연구수당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있는데, 이때 연구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Q41. 미지급인건비계상을 0% 참여인력의 연구수당 수령 가능?

미지급인건비계상을 0%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학생연구자 제외)의 경우 연구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인건비계상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항에 따를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Q42. 연구개발기관 이직 시 연구수당 산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1항 3호에 따르면 미지급인건비계상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교수님께서 타 학교로 이직을 한 상태라, 최초협약서에는 지금으로 작성되어있지만 추후 미지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구수당 집행 산식에 공동연구자 교수님의 미지급건도 포함하여 산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미지급 금액이 포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에 따를 때 연구수당 산출 시 포함되는 금액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 포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입니다. 다만, 연구수당은 원래연구개발계획서 금액보다 증액불가 합니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을

그러므로 문의하신 공동연구원이 참여연구원이라면 미지급인건비 금액이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7

### 위탁연구개발비

#### Q43.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은 무엇?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의 사용금액 정의는 무엇인가요?

##### A.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 Q44.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 잔액 전문기관 회수?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사용잔액을 종전에는 상위과제에서 반납했는데, 혁신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 A. 전문기관에서 회수합니다.

혁신법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사용잔액 등은 전문기관에서 직접 회수합니다. 정산도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위탁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에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등"이라 한다)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2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고시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부

### Q&A: 동일합니다.

혁신법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연구개발비 제도입니다.



## 1 인건비

### Q45. 인건비 월 지급액에 식대 및 주휴수당 계상?

연구과제 수행 중 추가 참여연구 인건비 지급 시 월 급여를 '(시급×근무시간)+식대+주휴수당'으로 책정할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 A.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은 근로기준법,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서 식대, 주휴수당 등이 인건비에 포함된다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③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한다) 총액으로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정부출연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2. 참여연구자가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 Q46. 비전임 교원(초빙교수)의 인건비 지급?

연구책임자의 신분이 '초빙교수'이고 별도 책정된 연봉 없이 강의하는 만큼 강의료만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학교 소속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의 경우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기관유형	현금 계상 가능 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li> <li>「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li> <li>「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li> </ul>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li> <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li> </ul>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li> <li>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li> <li>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li> <li>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li> <li>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li> </ul>	

#### Q47. 퇴직충당금 환급 비용 처리?

근로소득 대상인 연구원이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걸쳐 근무하던 중에 8개월만에 사직을 하게 되어 퇴직충당금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3차년도 과제에는 환입하여 진행하면 되지만, 2차년도는 과제를 정산하였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재정산 또는 반납) 해당 연구원 근무기간이 2차년도에 4개월, 3차년도에 4개월이었습니다. 2차년도 과제기간은 '20. 1. 1.~ '20.12.31., 3차년도 과제기간은 '21. 1. 1.~ '21. 6.30입니다.

#### A. 반납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2021. 1. 1.을 기준으로 2차년도에 해당하는 2차년도(2020. 1. 1.~2020.12.31.)에의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3차년도(2021. 1. 1.~2021. 6.30.)에 해당하는 퇴직충당금은 연구최종 종료(단계 종료)라면 반납해야 하며, 연구최종 종료(단계 종료)가 아닌 연구수행 기간 중이라면 환급된 퇴직충당금은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8. 연구기간 연장으로 현물 증액?**

코로나19로 협약기간이 6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물이 증액이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도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하려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49. 다년도 과제 최종 종료 시 퇴직금 전체 및 부족분 집행?**

다년도 과제의 경우 해당년도 과제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을 이월해서 최종 과제 종료 시 산정해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종 과제 종료 시 퇴직금 적립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직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참여연구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내에 집행(적립)해야 합니다. 다년도 과제에서 수행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참여연구원의 퇴직 적립금을 불가피하게 충당하지 못했거나 부족하다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에서 퇴직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Q50. 퇴직금 적립 잔액 연구개발비로 여입?**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해 1차년도에 퇴직금 적립(통합이지바로 집행완료 처리)하였는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기 적립한 퇴직금을 다시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년도 과제이면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기간 내라면 차년도로 이월 가능하며, 최종(단계) 종료되었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반납은 과제 기본정보, 반납금액, 반납 사유 등을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일 공문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정산>연구개발비반납>추가반납신청에 제출(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문이 접수되면 전문기관은 추가반납 승인 후 가상계좌를 발급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계좌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Q51.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

주 2회 출근해 파트타임으로 실험용 쥐를 관리하는 분에게 근로계약(단시간 또는 초단시간)을 체결하고 급여를 연구개발비(인건비 등)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A. 인건비 또는 연구활동비에서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인건비 계상 기준은 「근로기준법」,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자체규정을 확인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구원이면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며, 한시적인 인력 활용은 연구활동비(일용직활용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52. 비전임 교원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이 될 경우 인건비 계속 지급?**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A대학 비전임 교원에서 B대학 전임교원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B대학으로 과제가 이관 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신분변경(비전임→전임) 시 기준에 책정되었던 인건비 계속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대학(비영리기관) 소속의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신분에서 현금 계상이 불가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신분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시점(인사발령일 또는 임용계약일)부터 인건비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Q53.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기간(3개월) 동안 인건비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를 때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문의하신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인건비 지급은 위의 관련 규정과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인 경우 2개월은 사업자(연구개발비)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국가(고용보험)가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총액은 지급하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2****학생인건비****Q54. 학생연구원 증액 한도?**

학생인건비 증액의 한도가 있나요?

**A. 학위 과정별 계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학생인건비 기준금액은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기준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000,000원
-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4) 통합과정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단,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00만원 이내
  -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80만원 이내
  -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3****연구시설 · 장비비****Q55. 장비 구입 시 지체상금 반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비로 사용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개발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개발비(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최종(단계) 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 Q56. 3천만원 이상 수리 비용 심의 대상?

수행연구과제 연구에 사용하는 장비의 일부 부품 노후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부품 교체 등 전문업체에 수리를 맡기려고 합니다. 수리 견적을 약 3천 5백만원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장비구매와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요?

##### A.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비에는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⑤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또는 임차에 대한 것으로 장비수리비는 승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것과 수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57. 과제 종료 1개월 전 연구장비의 소액 긴급 보수비 집행?

연구 과제 종료를 1개월 이내로 남기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장비에 부가세 포함 33만원정도의 소규모 보수용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제 종료가 1개월 이내로 남았는데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직접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연구장비 보수가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르면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유지비가 포함되므로 문의하신 연구장비의 소규모 보수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58.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장비 철거 가능?

연구과제 종료 이후 연구장비의 철거까지 연구계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연구과제 종료 이후 철거되는 건에 대하여 연구 과제 종료 전에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A. 지출원인행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항). 이에 따라 문의하신 장비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 한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4****연구재료비****Q59. 서버용 메모리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서버용 메모리를 구입 하고자 합니다. 메모리가 범용성장비이기는 하나, 양자 컴퓨팅 과제 수행을 위한 계산용 서버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서 세목을 연구활동비로 구입해야 할지, 재료비로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A. 관련 조항과 특성 파악 후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연구실운영비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이 포함됩니다.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구재료비의 용도는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이 포함됩니다. 연구재료비는 일반적으로 소모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서버용 메모리 구입은 위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중에서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 · 특허 · 표준 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 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 훈련 비용, 학회 ·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 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 복사 ·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Q60. 협약 전 구입 했던 비용 현물 계상 가능?

연구재료비를 현물로 부담받기로 계상(계획)되어 있는데 1. 연구과제 협약 시작 전에 구입 했던 비용에 대해서 현물로 계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2. 연구과제 협약 시작 후에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 현물로 계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3. 다른 연구과제로 집행하여 구입한 연구재료비 비용도 현물로 중복 계상이 가능한지요?

#### A. 현물 계상은 가능하나, 중복 계상은 불가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에 따를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협약 시작 전에 구입한 비용, 협약 시작 후에 구입한 비용은 현물 계상이 가능하나, 다른 연구과제로 집행하여 구입한 연구재료는 현물로 중복 계상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령 A과제에서 구입한 재료는 A과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B과제의 현물로 계상하면 A과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연구재료비 공통 사용기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 5 연구활동비

### Q61. 학회장 겸직인 연구책임자의 학회출장비?

연구책임자인 대학 교수님이 학회장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원, 학생들의 학회 등록비, 학회 출장비 등이 지급 가능한지요?

#### A. 참여연구원인 경우 가능하나, 중복 집행은 불가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는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직접비),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참여연구원인 경우 사용합니다. 연구책임자가 학회장이라면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 참석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이 학회에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연구개발비와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원, 학생들의 등록비, 학회 출장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행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며,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회등록, 학회 참석을 위한 출장이어야 합니다.

### Q62. 세미나 개최 비용 처리?

1박 2일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들은 다음날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숙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숙박비는 출장비로 처리 해야 하는 건지 세미나 개최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 A. 가능합니다. 단,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미나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미나라면 숙박비는 사람에게 지급하므로 출장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미나 행사비용에서 숙박비를 일괄 처리하였다면 여비에서 관련 비용은 계상이 불가하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중에서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⑥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

**Q63. 회의비 처리 시 참석자 서명 필수?**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서명이 필수인가요?

**A. 필수 아닙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회의비 지출 시 증명자료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입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71〉

○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 증명자료

-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Q64. 특근 식대 집행?**

특근식대 사용 시 서명 유무가 궁금합니다. 회의비와 같이 연구책임자 서명만으로 가능한지, 특근자가 누구인지만 등록해도 되는지요?

**A. 가능합니다.**

야근·특근 식대 사용 시 증명자료는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입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72

- 연구활동비 중 야근·특근 식대 증명자료
  -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
  - ② 지출결의서
  -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Q65. 대학 내 내부 직원 전문가활용비 지급?**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 직원을 전문가로 활용하고 연구개발비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최소단위 부서가 아니면 집행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연구실)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에 대해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p169-170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중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 ❶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자체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참여연구자와 별도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참여연구자와 별도 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

#### Q66.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기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합니다. 사용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 Q67. 실험도구 수리비?

pipette(실험도구)점검 수리비가 연구재료비에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렸습니다. 장비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A. 자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pipette(실험도구)이 장비인지 사무용 기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면 연구시설·장비비이며, 장비가 아닌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리라면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자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Q68. 화상회의 후 모바일 상품권 지급?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회의비 처리 가능한가요?

##### A.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의인 경우 집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회의 장소에 외부기관 참석자 1인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지급은 불가합니다. 회의비는 회의 후 식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교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Q69. 비대면 회의 식비 사용 증명자료?**

비대면 회의 시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회의장면 캡처 자료 등입니다.**

회의비 집행 시 증명 자료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6. p171/p175). 또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라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의비 사용이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비가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는 위에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온라인 회의 장면 캡처 자료, 만약 외부기관에 식사가 제공되었다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과 포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Q70. 논문 삽입 이미지 저작권료 지급?**

리뷰 논문 투고와 관련해서 논문에 사용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료 지급이 연구개발비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정부연구개발비(직접비)는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문의하신 논문투고가 수행연구과제와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논문에 사용한 그림에 대한 저작권료는 논문투고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연구활동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71. 시약 보관할 시약장 구입?**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입한 시약류들을 보관할 시약장도 같이 구입하였습니다. 시약장의 경우 재료비에 해당하나요?

**A.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입니다.**

연구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시약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항에 따를 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자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Q72. 논문 관련 비디오 제작비?

논문 관련 비디오 제작 비용을 연구활동비 내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A. 제작 목적에 따라 간접비 또는 직접비로 가능합니다.

연구성과인 논문으로 출판된 내용을 비디오를 통해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 제작물로 이는 간접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통해 동료 연구자의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Q73. 장기간 전문가활용비 지급?

매 달 같은 분께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증빙 자료 등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지만, 같은 분께 매달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A.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연구목적 달성을 필요하다면 전문가활용비 지급 관련 자체규정 등을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자료는 내부 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자문 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 계좌이체증명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 제17조제2호가록에 따른 연구개발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Q74. 일용직 활용비 지출?

학생들에 대해 단기 일용직 활용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의 국가연구사업 참여율이 100%라도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한도는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에 대한 자세한 자체 내부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책정하면 될까요?

**A. 자체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를 때 대학의 경우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월 단위로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된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합니다. 대학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일용직 활용비에 관한 사항은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Q75.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지급 받는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분할 지급이 불가하여 간접비로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여(인건비 계상을 0%)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중복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연구수당

### Q76. 근로소득자의 연구수당 집행 시 기관부담금 집행?

근로소득자의 연구수당 집행시 발생 되는 기관부담금에 대해 인건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p177-178>

- 기관 유형별 연구수당 사용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유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증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Q77. 종료과제의 연구수당 집행?

연구종료 후 연구수당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될 경우, 단계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3개월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연구수당 집행도 이에 포함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 7

## 위탁연구개발비

## Q78.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위탁연구과제 협약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가세를 연구활동비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위탁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세는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169)

-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과제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함

## 8

## 간접비

## Q79. 연구실 폐기물 처리비 사용?

연구실 폐기물은 연구환경 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실 폐기물 처리비는 연구실 안전 관련 비용으로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를 사용합니다.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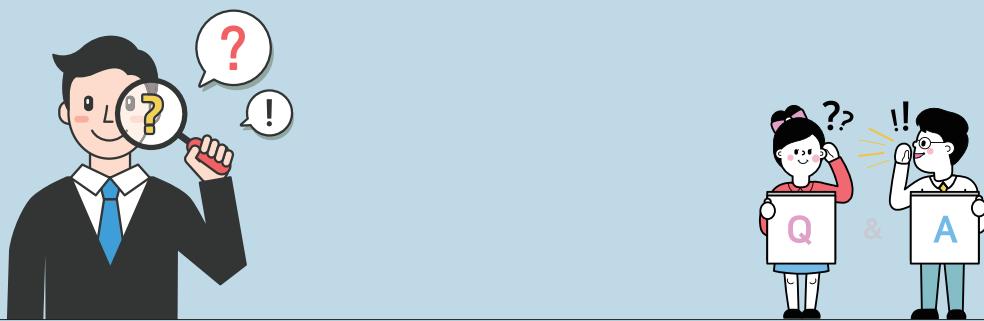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 관리비의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 · 관리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 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 ·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규 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공지사항  
<https://www.msit.go.kr>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사업자료실>사업관리규정  
<https://www.nrf.re.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범부처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 자료실>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 가이드  
<https://www.gaia.go.kr>



##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